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장 정 희 의원)

의 안	23-183
번 호	

발의년월일 : 2023. 11. .

발의자 : 장정희,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
김승수, 남해석, 오옥자, 이한동,
차해영, 한선미

1. 개정이유

결산검사위원의 자격과 대표위원 선임,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관련 사항과 그에 따른 제재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위원 자격 관련 사항 개정(안 제2조)

- 결산검사위원의 거주지 및 근무지 관련 제한 조문 삭제
-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경험의 기준 명확화

나.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지명 방식 개정(안 제4조)

다. 결산검사위원의 신분 상실 관련 기준 개정(안 제5조)

- 서울특별시세 및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분 상실하는 조문 신설
- 절차에 따라 신분상실하는 경우 중 일부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

라. 결산검사위원 제재에 대한 근거 조문 개정 등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붙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: 2023. 11. 17. ~ 11. 22.

나. 의견제출: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,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”를 삭제한다.

제2조제2항 제2호 중 “정부투자기관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험”을 “3년 이상의 경험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원이 된다”를 “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

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감사위원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

제5조제3항 중 “의회의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에 따라 의회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제 제1항제3호 및 제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5조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

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

3.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

4. (생략)

<신설>

③ 제2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해임은 의회의 의결로 한다.

제5조(검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세를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4. (현행과 같음)

5.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

③ -----
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에 따라 의회 ---.

<p>제8조(검사위원회에 대한 제재) ① 검사위원이 <u>제5조제2항</u>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조(검사위원회에 대한 제재) ① ----- <u>제5제제1항제3호</u> 및 <u>제5조제2항</u>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50조(결산) ① ~ ② 생략

-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3. 7. 10.] [대통령령 제33621호, 2023. 7. 7., 타법개정]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(이하 “감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시·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, 3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(常勤)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 개요

2. 세입·세출의 결산

3. 재무제표

4. 성과보고서
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무과 지출팀 최은희
연 락 처	02-3153-8634